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248호(號) 1934(昭和 9)년 7월 9일 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49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4(昭和 9)년 8월 9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4(昭和 9)년 7월 9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조선내발착(朝鮮內發著)의 부문[部] 석회석(石灰石)의 항(項) 임률란(賃率欄) 중(中) 「엔(円)1.97엔」을 「엔(円) 2.51」로 개정(改正)함.